

경제부흥, 국민행복, 문화융성, 평화통일 기반 구축 보도해명자료			
보도일시	2017. 3. 26.(일) 배포 시	배포일시	2016. 3. 26.(일) 10:30
담당과장	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장 고광희 (044-215-2750)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갑찬 (044-203-4330)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장 이동훈 (02-2100-2920)	담당자	염철민 사무관 (044-215-2754) yum7157@korea.kr 박태현 서기관 (044-203-4331) pthtop@motie.go.kr 김정주 사무관 (02-2100-2921) bluesky3@korea.kr

제목: 조선일보, 3.25일자 「대우조선 손실 “59조원(금융위원회) ” “17조원(산업통상자원부) 누구 말이 맞나」 제하 기사 관련

<언론 보도내용>

- 조선일보는 ‘17.3.25일 「대우조선 손실 “59조원(금융위원회)” “17조원(산업통상자원부)” 누구 말이 맞나」 제하의 기사에서
 - 산업부는 대우조선을 시장논리에 따라 처리한다면 국가경제적 손실이 최대 17.6조원일 것으로 추정했고, 이는 금융위원회가 추가지원을 결정하면서 근거로 내세웠던 추정손실액 59조원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차이가 나며,
 - 금융위가 대우조선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액 부풀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
 - 아울러 금융위와 산업부 간 시각차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구조조정을 두고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고 보도

<관계부처 입장>

- 대우조선 구조조정시 발생하는 손실액은 “자율적 구조조정, P-Plan, 통상의 법정관리, 청산” 등 처리방식에 따라 각각 상이함
 - 각 경우의 손실액은 다양한 가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나,
 - 청산시 손실 예상액은 몇 가지 가정하에 추정가능한 만큼, 3.23일 채권단은 청산시 국민경제적 손실규모 최대치 59조원을 제시하였음
- 이처럼 동 기사에서 제시한 손실추정액 59조원과 17조원은 산출의 전제가 되는 기본 가정이 근본적으로 상이하여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수치임
 - ① 대우조선 도산시 손실추정 최대치 59조원은 실사법인의 자료 검증 등을 거쳐 주채권은행인 산은이,
 - 유동성 부족이 현재화된 상황에서 신규자금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“기업은 도산처리되고 既수주한 선박의 건조가 중단”된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산출한 최대치
 - 이는 여러 가정하에서 추정된 최대치임을 3.23일 산은·수은이 발표한 「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추진방안」, 금융위원장 브리핑자료 등에서 명확하게 밝힌바 있음
 - ② 반면, 동 기사에서 언급된 또 다른 추정액 17조원은, 대우조선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기수주선박 건조를 위한 자금 지원방안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산정한 추정액임

- 법정관리는 즉각적인 청산이 아니며, 대규모 건조계약취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**회생계획안이 이행될 경우, 건조중 선박에 既투입된 원가의 상당부분은 손실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**과

- 이 경우 일시에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지는 않으며, 건조물량 감소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력이 감소될 전망이라는 점을 반영하였음

③ 한편, 자율적인 채무재조정이 실패할 경우 P-Plan을 통해 단기간내 **신속히 법정관리를 마무리**하여 공정지연 및 건조계약 취소를 최소화하고 신규자금 지원을 통해 **선박을 정상 인도**한다면,

- 관련 **손실발생을 상당부분 축소**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임

⇒ 이와 같이 구조조정 시나리오별 전제, 금융지원의 지속여부 및 지원규모, 법정관리 체제의 장기화 여부 등에 따라 **추정 피해액은 매우 가변적**이므로, 이를 **단일 기준으로 계량화하여 피해액을 확정하는 것은 어려움**

□ 정부와 채권단은 워크아웃, 법정관리, 기업분할, 단순 유동성 지원 등 모든 선택 가능한 방안들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우조선의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했으며,

○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권단이 최종적으로 확정·발표한 방안*임을 알려드립니다

* 최대주주 및 최대 채권자인 산은·수은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한 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수차례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산은·수은이 최종적으로 확정·발표

□ 정부와 채권단은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자율적 합의에 의한 정상화를 기하되, 자율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P-Plan으로 진행한다는 대응계획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층 mosfpr@korea.kr

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